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890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5일

라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2. 제안이유

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, 민·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,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(안 제9조의2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(이하 “일자리위원회”)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나. 일자리위원회 개요 및 운영 경과

- 일자리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」(이하 “일자리 조례”)에 근거해 ▶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, ▶일자리 창출과 취업·보조금 지원사업, ▶고용촉진,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, ▶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심의·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 - 위원회는 ▶서울시의원, ▶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, ▶경제·노동계·사회단체 등 사회각계 대표, ▶전문가 등을 포함해 30명 내외로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과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¹⁾에 따르면, 자문기관이나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관련

1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

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함.

- 이에 2015년 일자리조례 제정 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존속기한을 2년으로 하였음.
- 이후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7년 8월 11일부로 만료되었음에도 기한연장을 위한 조례개정 없이 운영해오다 시의회에 지적받은 후에야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(2019.9.26.).

<일자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연혁>

○ 2015.	일자리 기본 조례 제정 및 일자리위원회 신설 -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추진('15.6월)
○ 2015. 8월	제1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/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 - 위원/임기 : 30명(실무7명), 2015.8.12.~2017.8.11.(2년)
○ 2017. 8월	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만료(부칙 제2조) *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 없었음.
○ 2017. 8월	제2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/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 - 위원/임기 : 33명(실무20명), 2017.8.12.~2019.8.11.(2년)
○ 2019. 9월	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조항신설 - 임종국의원 발의(제9조의2)
○ 2019.10월	제3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·운영 - 위원/임기 : 32명, 2017.8.12.~2019.8.11.(2년) 제3기 서울시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 - 위원/임기 : 15명, 2020.10.6.~2021.8.11.(10개월)

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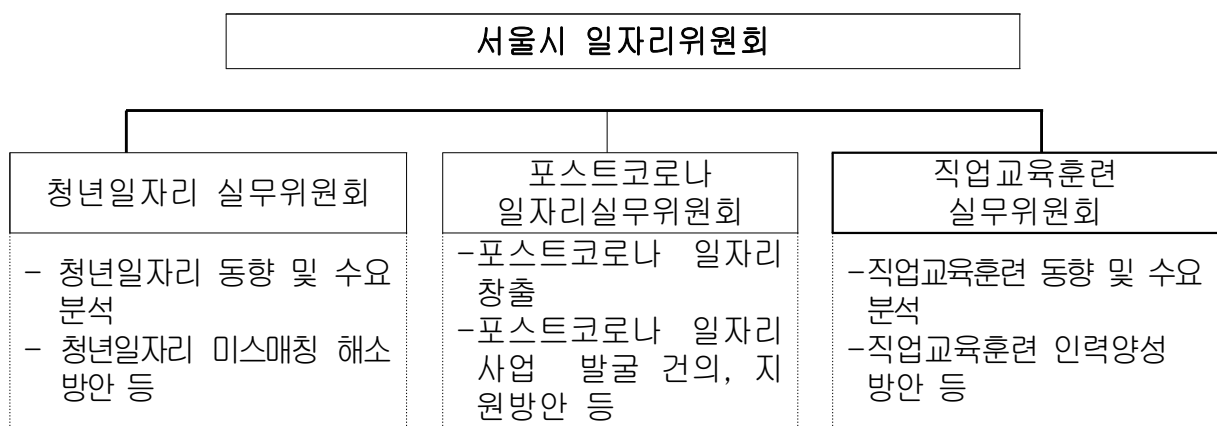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다.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여부(안 제9조의2)

- 일자리위원회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와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(조례 제9조).
- 그런데 최근 3년간 일자리위원회 개최건수가 3회에 그쳤으며, 회의 안건 역시 정책논의가 아닌 서면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보고였던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.
-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또한 서울시 일자리 정책 개발과 평가,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수행과 운영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.

<서울시 일자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조도>



※ 실무위원회는 2년 마다 새로운 분야로 구성되며, '3기 실무위원회(2020.10~2021.8.)'에서는 청년일자리/ 포스트코로나/ 직업교육훈련 분야로 위원회가 구성됨.

- 2019년 2기 실무위원회는 종료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차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, 2년(2019~2020년)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.

<일자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실적(최근 3년)>

연도	회의개최일시		회의 안건
2019	일자리위원회	미개최	-
	실무위원회	미개최	-
2020	일자리위원회	'20.4.3. (서면)	2020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보고
		'20.12.10 (서면)	2020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2021년 계획 보고
	실무위원회	미개최	-
2021	일자리위원회	'21.3.30. (서면)	2021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실행계획 보고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자문
	실무위원회	'21.3.25. (대면)	기업·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
		'21.3.30. (대면)	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방안

-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4차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은 심각한 실업 문제와 함께 산업·노동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올해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음.
- 서울시민의 피부에 닿는 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·논의과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민·관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됨.

- 그러나, 일자리위원회 설치(2015년) 후 지금까지 존속기한 법적근거 미비, 회의개최 부진 등 부실한 위원회 운영·관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위원회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박 은 샘	02-2180-8064